

■ 도선법 시행령 [별표1] <개정 2024. 6. 25.>

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(제7조제3항 관련)

구분	시험과목	배점비율 (단위: %)
필기 및 면접	1. 법규: 「도선법」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해양환경관리법」,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」)	30
	2. 선박운용: 선박조종 이론,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, 추진 및 조타시스템,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, 예선(曳船)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, 조위(潮位)정보시스템, 지문(地文)항해(항로표지 포함), 선박 복원성, 해양기상,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, 수색 및 구조(해상통신 포함)	30
	3. 해상교통관리: 선박교통관제,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, 해상교통안전진단,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	15
	4. 영어: IMO표준해사통신영어, 해사영어, 일반영어	25
	계	100